

●**환경부공고제2018-842호**

●**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-568호**

「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환 경 부 장 관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(안) 행정예고

1. 폐지사유

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자율적 폐기물감량제도에서 사업장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적극 관리하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로 근거법령 등 관리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「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」 폐지

2. 의견 제출

「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」 폐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자원순환정책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(전화 : 044-201-7354 또는 7353, FAX : 044-201-7351, 전자우편 : yhjung417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필요사항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/정책 ⇒ 입법·행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**국토교통부공고제2018-1462호**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특수건설(김중현) ② 한국수자원공사(이학수)
③ (주)피에이티씨(앤드류존메이어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590-6400 ② 042-629-3114 ③ 02-563-7111

2. 명칭 : 관 파쇄 추진기술을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로의 비굴착 교체 방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상하수도 /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

<기술의 요지>

노후된 기존 배관을 굴착 하지 않고 원뿔의 파쇄 헤드를 견인하여 기존관을 파쇄함과 동시에 후미에 연결된 신관(폴리에틸렌 다중복합관)으로 교체하는 공법으로, 굴착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 구간이나 전력, 통신, 오수관 등 지장물이 많은 구간, 또는 가정의 담장/화단과 같은 구간 등 굴착이 어려운 매설 배관의 교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곡관부 적용이 가능하며,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수 매설관 위치 탐사 작업 및 가급수 배관 연결이 포함된 기술

<범위>

노후된 상수도관을 굴착 하지 않고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하며 곡관부를 포함한 기존관을 파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단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하는 비굴착 관로 교체 공법으로 관경 15m~80mm의 소구경 관로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1477호

관보 제19373호(2018.11.7.)에 개제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1431호(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) 입법예고를 취소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1478호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